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수 신 사업장 대표

(경 유)

제 목 위험성평가 법 개정사항 안내 및 담당자 교육 참여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에 따라 2026. 6. 1.부터 위험성평가 제도가 개편되어 위험성평가의 정의가 재정립되고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3. 사업장에서는 개정 내용에 맞추어 위험성평가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이해와 실무 역량이 제도 이행의 핵심인 만큼, 우리 협회에서 상시 운영 중인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에 귀 사 관계자 분들이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험성평가 제도 주요 개편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026. 6. 1. 시행)

가. 주요 개정 내용

조항	구분	주요 내용
제1항	개정 (정의 재정립)	사망 가능 유해·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위험성 파악부터 개선대책의 수립·시행까지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
제3항	신설 (근로자 참여 확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함
제4항	신설 (결과 공유 및 교육)	평가 결과를 교육·설명회·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하고, 중대재해 우려 요인은 근로자에게 상시 주지하도록 노력

나. 과태료 신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위반 내용	과태료	부과 시행 시기
위험성평가 미실시	1,000만 원 이하	50인 이상 사업장 : 2027. 1. 1. 50인 미만 사업장 : 2028. 1. 1.
근로자 참여 및 결과 주지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 거부 등)	500만 원 이하	

※ 과태료 부과 시기와 관계없이 개정된 위험성평가 의무는 2026. 6. 1.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5. 교육 안내

- 가. 교육과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상시 운영)
- 나. 교육대상 :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다. 교육비 : 216,000원 / 1인 (교재비 포함)
- 라. 교육일정 : 상시 운영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 educisa.or.kr 참조)
- 마. 교육시간 : 09:00 ~ 18:00 (2일, 16시간 과정)
- 바. 교육장소 : KISA 울산안전보건교육센터 (울산 북구 명촌21길 4-9, 1층 교육장)
- 사. 교육신청 : 온라인접수 (educisa.or.kr)

6. 추가안내

- 가. 계좌번호 : 농협 039-01-242317 / 예금주: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 전일까지 입금
(당일 카드결제 가능, 계산서는 교육 당일 발송)
- 나. 주차안내 : 메가마트 신선도원몰 별관 주차 가능(주차권 지급)
- 다. 문의사항 :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052-267-1500

붙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신청방법 안내 1부. 끝.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장



기안자	과장	10/13 박우림	부장	10/13 임채현	지회장	10/13 이후석
-----	----	--------------	----	--------------	-----	--------------

협조자	차장	10/13 김언영
-----	----	--------------

시행 울산교육운영부-3524 (2026. 10. 13.) 접수 ()

우 4425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750-5 (진장동) / <https://www.safety.or.kr>

전화 052-267-1500 /팩스 0507-351-7022 /이메일 eeekg53@safety.or.kr / 공개